

성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5. 8. 3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7. 28. 개정 2017. 5.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대경대학교 성교육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구성원간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관한 피해 예방, 상담, 사건의 접수 및 처리와 이와 관련된 문제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①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 ② 성폭력 피해상담과 신고의 접수
- ③ 공식 접수된 사건에 대한 1차적 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 ④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화해, 조정
- 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조치 <개정 2016.6.23.>
- ⑥ 기타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사례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① 본 센터는 교학처 산하기관으로서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센터에는 교원, 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겸직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성교육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본 센터의 인원 충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고충심의위원회) ①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센터장), 기획조정실장,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에 3인의 교수위원, 1인의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 2016.6.23., 2016.7.28., 2017.5.23.>

- ② 교수위원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교수위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외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학기당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에 관한 사항
2. 성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성폭력사건의 접수) ① 본 센터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또는 제3자가 성폭력사건을 신고한 즉시 이들과 상담하여야 한다.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전화통신 포함) 또는 방문의 방법에 의하며,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 센터는 피해자 등의 사건 신고 접수 시에 상담소 규정 제10조상의 2가지 간이절차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이하 정식절차라 함)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하여 피해자 등이 어떤 처리방식에 의한 사건해결을 원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정식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사건을 접수한 경우 센터장은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1차 조사) 허위신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고충심의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소의 조사와 정보제공의무) ① 센터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한 제3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조사내용과 처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조건부 신고와 상담소의 조정에 의한 해결) ①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정식절차를 밟기를 원하지 않고 센터에 의해 비공식적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조건부 신고절차 또는 센터 조정에 의한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조건부신고절차는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어떤 경우에도 정식절차로 회부되지 아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교육지원센터 조정에 의한 해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화해, 조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적절한 구제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센터장이 제시한 조정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가해자에게 명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1. 공개사과
2.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3. 사회봉사
4.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5.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6.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④ 가해자가 제3항의 합의된 구제조치를 이행하면 신고 된 성폭력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한다.

⑤ 센터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및 가해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해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 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당해 사건을 공식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와 피해자 등의 보호) ① 센터장과 그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진을 비롯하여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과 그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센터장과 그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센터장과 그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예·결산) 본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본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7조 (고충심의위원회) ①항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